
第14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7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6年12月23日(月) 午後2時

議事日程

1. 1996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財務局所管)
2. 1997市有財產管理計劃案(財務局所管)
3. 19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
4. 1997市有財產管理計劃案(上水道事業本部所管)
5. 1997市有財產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
6. 1997公有財產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
7. 堂山鐵橋全面撤去및再施工暫定延期要求建議案
8. 1997年度서울特別市豫算案
9. 1997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10.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1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
13.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4.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
15.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
16.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
17.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案
18.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9. 서울特別市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0.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1.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2. 서울特別市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關한基本條例案
 23.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24.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
 25. 電氣昇壓未改善學校의昇壓豫算에對한韓國電力의支援建議案
 26. 私立幼稚園教師에對한擔任手當支給에關한請願
-

附議된案件

1. 19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財務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 4面
2.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財務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 4面
3. 19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4.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上水道事業本部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 8面
5.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 10面
6. 1997公有財産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 10面
7. 堂山鐵橋全面撤去및再施工暫定延期要求建議案(交通委員會委員長 提案) ... 14面
8. 1997年度서울特別市豫算案 ... 24面
9. 1997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 38面
10.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7面
1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7面

12.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9面

13.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9面

14.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1面

15.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1面

16.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3面

17.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3面

18.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金永春·金信浩·金永俊·김장주·黃炳五議員 外 18人 發議) ... 55面

19. 서울特別市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八卦 議員 外 19人 發議) ... 55面

20.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教育監 提出) ... 57面

21.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1面

22. 서울特別市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關한基本條例案(金永春 議員 外 34人 發議) ... 63面

23. 서울特別市流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5面

24.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內務委員會 委員長 提案) ... 67面

25. 電氣昇壓未改善學校의昇壓豫算에對한韓國電力의支援建議案(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 提案) ... 69面

26. 私立幼稚園教師에對한擔任手當支給에關한請願(鄭韓植 議員 紹介) ... 69面

(14時 39分 開議)

○議長 文一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定期會 제7차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19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財務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2.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財務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財務局 所管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과 의사일정 제2항 財務局 所管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金相男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身上發言 먼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身上發言 申請해 놓았잖아요.)

○金相男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金相男 議員입니다.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16일 本會議에서 보류되어 우리 委員會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 6필지 6만 4,456m²와 건물 5만 5,700m²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財務局長과 環境管理室長의 보충설명을 듣고 또한 議員들 간에도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도시계획 해제 등 명확한 방침 확정 후에 공원녹지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공원녹지의 우선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쪽으로 표결처리되었습니다. 9 대 2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 5건 1만 4,005m²와 건물 8건 1만 5,546m², 선박 3건 13척입니다.

토지취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廣津區 廣壯洞 소재 토지 27필지 3,488평은 도심 속의 자연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이며, 中區 新堂洞 외 3건의 토지 748평은 소방파출소 신축용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축, 증축 및 개축 8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3,864평은 동작소방서, 중랑소방서, 가락파출소 등 소방기관용으로 신축하려는 것이고, 증축 239평은 道峰區 放學洞 소재 소방학교 내 구조구난훈련장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개축 598평은 城東區 송정파출소 등 노후된 파출소 건물을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선박취득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순찰업무용인 행정선의 노후로 인하여 행정선 1척을 교체 매입하는 것이며, 國家 비상사태시 漢江 도강수단으로 제 공키 위한 도강선박이 노후되어 예선 4척과 부선 8척을 교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자연녹지 보전을 위한 토지매입은 도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소방관련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委員會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財務局 소관 96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과 財務局 소관 97市有財產管理計劃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6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財務局所管)

(뒤에 실음)
.....

1997市有財産管理計劃計劃案
(뒤에 실음)

.....

3. 19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3항 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文龍子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발언권 쥐요, 왜 발언권 안 주냐고 요.)

조금 이따 준다고 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文龍子 議員;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文龍子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保健社會委員會 소관 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안건은 地方財政法 제110조 및 서울特別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서울特別市議會의 의결을 거쳐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0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2월 12일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執行部の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동안을 우리 委員會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本 委員會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同僚議員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96女性發展基金運用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96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

(뒤에 실음)
.....

4.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上水道事業本部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5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李康玉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왜 발언권 안 줘요?)

(「신상발언을 왜 안 주고 그래요. 議長, 발언권 줘요.」 하는 議員 있음)

○李康玉 議員; 심사보고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왜 발언권을 안 주느냐고요. 그것도 내가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와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발언권 달라고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독주를 한다고, 이것은 권력남용이야.)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천백만 서울市民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西大門區 출신 水資源管理委員會 소속 李康玉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수도사업특별회계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은 96년 11월 1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國家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시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재산가치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鷺梁津淨水事業所 内の 서울地方鐵道廳 소유인 철도용지 5필지 7,339m²의 토지를 淨水事業所에서 점유하여 사용중이고, 서울시 소유인 수도용지 1필지 5,454m²를 서울地方鐵道廳에서 점유하여 철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호교환하여 행정목적대로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공유재산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는 교환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재산교환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14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수도사업특별회계)

(뒤에 실음)
.....

5.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6. 1997公有財産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56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住宅局 소관 97市有財產管理計劃案과 의사일정 제6항 住宅局 소관 97公有財產管理計劃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都市整備委員會 朴贊國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주는 타임이 있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줄 수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 알아서 다 주게 되면 주는 것이지 왜 안 줘요, 주지.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줘요? 줘야지)

기다리세요, 줄테니까.

○朴贊國 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朴贊國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제14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한 97公有財產管理計劃案과 97市有財產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公有財產管理計劃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97市有財產管理計劃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公有財產管理計劃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9,131가구분과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70필지 7,715m²로써,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는 住宅改良促進에關한臨時措置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시소유 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으로는 시유지 매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8개 구역에 2,925필지 약 46만 1,067m²입니다.

이상 市長이 제출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관리계획이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서울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7조제1항에 정한 사업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고 그 목적도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는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16필지 1만 1,078.5m²를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시범아파트 및 중산층 아파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촌 시범아파트와 중산층 아파트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준공되었는데 분양당시 동 부지에 대하여는 지적 미확정 등의 이유로 추후 대지처리 방법만을 분양계약서 제4조에 아파트부지의 지적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일지구의 아파트 입주자 공공지분으로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있어, 이촌 시범아파트의 경우 96년 5월 27일, 중산층 아파트의 경우 96년 7월 11일 현 건물소유자 대다수가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요구함으로써 매매

계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계약이전까지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市長이 제출한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시유재산관리계획이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7조제1항에 의거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地方財政法 제69조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그 동안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로 매매계약 체결시 과거 5년간의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건부 동의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97公有財産管理計劃案과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구체적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과 주택국 소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住宅局所管)

(뒤에 실음)

.....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

7. 堂山鐵橋全面撤去및再施工暫定延期要求建議案(交通委員會
委員長 提案)

(15時 04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堂山鐵橋全面撤去및
再施工暫定延期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朴謙洙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議員; 交通委員會 朴謙洙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제가 交通委員會에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서울시議員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몇 말씀드리면서
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당산철교는 세로보에 균열이 가고
30km로 서행되며, 세계 철교역사상 건설한 지 12년만에 철
거되는, 기네스북에 1주일 뒤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에 市長께서 당산철교를 철거하겠다고 1차 결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交通委員會에서는 市長의 입장과 交通
委員會 입장을 끊임없이 조율을 하면서 당산철교 철거에 대
해서 확실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 주었으면 하
는 그런 입장으로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당산철교 철거로 인한 市와 市議會 間的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집행부에서 市議會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市長이 철거를 결정한 근거인 산타페회사의 진단은 市가 원인규명을 위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남광토건이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交通委員會에서 주장할 때 제3의 기관에 공식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6개월 정도면 진단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철거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해서 지난 6월에 交通委員會 전체 이름으로 金亨吉 議員님 발의자로 市長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市長은 한 마디로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더 이상 필요없다 하고 잘라서 회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市長이 이미 작년 12월 4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市議會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市長은 경제학자이지 기술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철골구조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市長께서 市議會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진단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철거 여부를 결정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市長 사고방식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한다는 정밀진단은 8월에 법원으로 하여금 대한토목학회에 무려 12억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주고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交通委員會가 당한 설움을 한 말씀 議員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市에서는 기자들에게 금년 12월 10일쯤 가면 당산철교 철거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市議會에는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交

通委員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토요일, 市長 면담을 요구해 놓고 12월 9일 월요일 면담을 추진하니까 市長은 交通管理室長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12월 10일 오후에 市長 면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12월 10일 오전에 市長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交通管理室長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어떻게 市에서 기자들에게는 12월 4일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것이 市議員들에게는 상임위가 그렇게 열리고 있었으면서도 말 한 마디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전에 市長은 발표를 할테니 오후에 당신들은 와서 약속나 하고 가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市議員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市議員 면담을 기피하는 사실은 바로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산철교전면철거및재시공잠정연기요구건의안이 市長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市長께서 그간에 당산철교에 대한 交通委員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市長 계신 데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市長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市長의 사고방식은 기자와 市 집행부는 있을지언정 市議會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거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책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議員님들, 12월 4일 市長께서 결정했던 것은 기술회의나 자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서 토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산타페사 보고서를 12월 4일 이전에 市長께서 먼저 입수를 하고 그것을 혼자 독

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 副市長을 비롯한 關係官들을 모아놓고 12월 4일 철거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책결정자가 그렇게 했을 때 참모들은 그 잘잘못을 따질 이유없이 정당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할 뿐입니다. 그 뒤로 地下鐵公社나 交通管理室에서 했던 것을 보면 당산철교가 위험하고 매우 불안하다는 것만 홍보를 했지 당산철교가 보수보강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연구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산철교는 어떤 입장이나, 한국강구조학회가 5,000만원 들여 처음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광토건이 3억원을 들여서 산타페회사에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산타페사 보고서에 보면 아무런 보수보강이 없이도 3년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12억원을 서울시 돈, 地下鐵公社 돈으로 해서 대한토목학회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토목학회와 법원의 계약내용을 보면 내년 3월 12일까지 철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난번 시정감사에서 나왔는데 명문으로 내년 3월 12일까지는 철거를 마십시오. 왜냐, 다리가 얼마나 더 수명이 남아 있는가, 잔존수명과 보수보강방법이 있느냐, 남광토건에 잘잘못을 따져서 757억원이라는 돈을 청구를 하려면 남광토건의 시공 및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인을 밝혀 내게 되고 원인을 밝혀 내면 보수보강방법이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법원

과 대한토목학회의 계약서를 보면 잔존수명이 나오고 보수보강방법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31일 금년말을 기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내년 3월에 즉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당산철교의 철거를 결정해라 하고 대한토목학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市長 판단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잔존수명이 몇 년 훨씬 더 나오고 보수보강 하면 몇십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철거를 강행할 경우에 市長의 성급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市民, 言論, 議會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반발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철거를 강행했을 때 시공사인 남광토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광토건이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괜히 서울시가 지레 겁먹고 철거만 해 버렸습니다.

세번째는 뭐냐, 시민의 반발이 불을 보듯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1월 1일부터 3월 12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3개월 동안 중단된 전철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으니까 더 철거 중단해라 시민 여론이 이렇게 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3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케이블 철거하고 컴퓨터 철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철골구조물 외의 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시민반발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철거로 결정이 나면 다행이지만 나지 않을 경우, 보수보강방법이 나올 경우 철거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대한토목학회의 보고 3개월만

기다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市長은.

지금 당산철교를 저희가 연구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보 균열이 하루에 두 건씩 난다고 엇그저께 市長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는 한 달에 8건에서 18건씩 균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3건, 10월에 2건, 11월에 1건, 12월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균열상태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왜냐, 더 균열날 것이 없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두번째는 뭐냐, 중대균열이라고 생각하는 5곳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5cm, 10cm 이하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균열이 10cm 이상이 넘어가야 그때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10cm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뭐냐, 당산철교가 市長께서는 트러스교이기 때문에, 트러스교도 시공에 잘못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러스교가 성수대교와 다른 것은 성수대교는 다리와 다리 사이가 똑 끊어지는 다리입니다. 가운데가 떨어져요. 트러스교는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밀리면 한쪽으로 밀려가서 한쪽에서 그냥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무너지려면 이상 징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징후를 보기 위해서 지금 地下鐵公社 간부 직원 8분이 현미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 12분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산철교를 1월에 자른다고 합니다.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어요. 설계 맡긴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市政監査에서 밝혔듯이 설계가 정확하게 되려면 1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유신설계공단에서 설계를 1년을 거쳐서 당산철

교 설계가 나오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다리를 끊고 보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올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3개월을 참지 못합니까? 꼭 12월 31일 철거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토목학회에서 내년 3월에 나오면 그것 보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당산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당산철교가 환자라면 市長은 보호자고, 대한토목학회는 의사입니다. 현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종합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 진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면서 미리 예단을 해서 환자를 안락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락사 된 후에 의사 소견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치료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만약 소견을 제시하면 보호자인 市長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市長이 직접 제 말씀을 들어주셨어야 하는데 제가 市長이 없는 관계로 議員님들께 그간에 交通委員會에서 고민했던 부분의 일단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산철교에 관한 한 저희가 참으로 홍보부족, 이를테면 市議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市の 홍보기능에 늘렸습니다. 市長 결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당산철교는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주일 동안 市長께서 꼼꼼이 결정하셔서 대한토목학회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했으면 市長 정책결정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당산철교에 관한 한 議會의 본분을 끝까지 다 하고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기정 사실화된 당

산철교 철거문제가 저희 交通委員會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 주십사 하는 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이 연기요구건의안이 저희 議員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市議會가 그래도 일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一權 議長, 李聲九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交通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堂山鐵橋全面撤去및再施工暫定延期要求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堂山鐵橋全面撤去및再施工暫定延期要求建議案
(뒤에 실음)

.....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金芳任 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金芳任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芳任 議員; 議員 여러분, 참으로 이 발언 한번 얻기 어렵

습니다.

우리가 議員이 신상발언 한 번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議會에서는 議員의 신상발언 정도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사리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명목으로 바꾸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本議員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돼 왔나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반추해 볼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이런 議員 언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議員 여러분, 오늘 저는 아직 현재는 副議長이지만 副議長님께서 그 동안 당신이 副議長을 수행하시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격려의 오찬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 선물 허리띠 하나씩 주시길래 받아가지고 오는 도중인데 여기 다 대고 하시는 말씀 왈, 적어도 議會를 이끌어 왔다는 議會幹部이시라는 분이, 이런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 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직접화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議員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접화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담이한테서 선물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기분 좋겠네. 그래서 가만히 걸어오니까 그 다음 말이 구두담이한테 선물 받은 사람은 결국 짝새밖에 더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용어가 우리 議員의, 더구나 전반기 議會의 운영을 이끄셨다는 運營委員長님 입에서 이런 용어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議員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용어를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같은 議員끼리? 그리고 덧붙여 지난번 議長團選舉에 있어서 무슨 필적감정을 했느니, 4명의 필적을 감정했더니 어떠느니 이러는데 여기 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님 계시니까 여쭙어 봐야 겠습니다.

필적감정하게 돼 있습니까?

직접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돼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필적감정을 했는지 이것 적어도 우리 議會에 倫理委員會가 있으니까 倫理委員會에 회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議員들이 투표한 것에 대해서 필적감정 얘기가 나왔으며, 어떻게 돼서 누구 누구가 누구를 안 찍었느니, 찍었느니 이런 필적감정 얘기와 더불어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식으로 議會機構에 있는 倫理委員會에 이것을 넘기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저는 동의를 내놓겠습니다. 동의에 찬동해 주시면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倫理委員會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말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지금 이 문제는 다음 倫理委員會에서 새로 한번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本會議場에서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執行部 公務員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議員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1997年度서울特別市豫算案

(15時 26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서울特別市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申垆植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垆植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소속 申垆植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趙淳市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이 1997년도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修正豫算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민선지방자치 2차년도인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안전, 교통, 환경, 지역경제, 복지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 등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1997년도 서울特別市 豫算案이 지난 11월 7일 우리 議會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 제출되어 소관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해 우리 委員會에

서는 그 동안 예산과 결산심의를 위해 이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를 초청하여 2차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방대한 서울시 예산에 대해 짧은 기간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소관분야별 33명의 豫決委員을 5개 팀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연구와 팀별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실시한 결산승인시 채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나름대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常任委員會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상정하여 서울시 企劃管理室長의 제안 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동안 委員 여러분의 자료수집과 지역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수를 변경하고, 또는 추운 날씨에 회의실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치는 등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12월 12일 제6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5명으로 구성된 豫算綜合調整小委員會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1주일 동안 중요쟁점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委員 상호간 그리고 執行部와의 진지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편성지침 외에 서울시 시정개발3개년계획과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더불어 서울시 중점사업 추진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서 밤을 새워가기를 거듭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조 8,900억원으로 96년도 5조 1,452억원

에 비해서 14.5%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조 4,147 억원으로 전년도 3조 4,674억원에 비해 1.5%가 줄어든 총 9 조 3,047억원으로써 전년도 8조 6,126억원에 비해 8.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과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43억 7,800만원으로 0.05%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一般會計豫算總則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서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잡수입 33억 5,000만원과 지방채의 10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138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3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2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 각 분야별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억원 삭감, 교육 및 문화 102억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129억원 삭감, 사회보장 9억원 삭감, 농수산개발 134억원, 지역경제개발 3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72억원, 교통관리 10억원, 예비비에서 140억원 등 총 7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175억원 삭감, 토지구획정리사업 80억원 삭감, 수도사업에서 173억원 등 총 42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의회 운영 4억원 증액, 일반행정비 12억원 증액, 교육 및 문화 57억원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239억원 증액, 사회보장 73억원 증액, 구청 및 지역사회개발 2억원 증액, 국토자원보존개발 228억원 증액, 교통관리 120억원 증액 등 총 735억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295억원 증

액, 토지구획정리사업 80억원 증액, 수도사업 9억원 증액 등 총 3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의 수정에 따라서 豫算總則 제1조를 비롯해 각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어느 해의 예산안보다 알차고 건설하게 편성되어 市民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委員會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계속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사무와 국고보조기준을 등에 의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둘째, 서울地方警察廳에 지원되는 민생치안 관련경비는 1998회계연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셋째,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요시책사업의 하나인 공원대상 부지의 매입과 주차장 용지의 매입, 도로용지 매입 등 적지 않은 시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이 市議會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위법성이 노정되어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넷째, 서울特別市補助金管理條例는 市議會가 구성되기 전인 88년에 제정되어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방금 梁敬淑 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梁敬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소속 梁敬淑 議員입니다.

本 議員은 97년도 豫算案 議決에 앞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을 벌여왔던 OB맥주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예산안과 관련한 몇 가지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OB맥주공장부지와 관련해서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보류 한번에 本會議 回附 또 本會議 保留, 그래서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의결을 다시 하게 되었고, 두번의 再議決을 했습니다. 그리고 豫決委 計數調整委員會에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計數調整委員會와 豫決委에서는 예산의 반영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OB공장부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편중된 예산의 편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議會가 신중한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OB에 연간 천몇백억의 적자설 속에서 2萬여평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민들이 몇천원에서 몇만원의 세금을 낸 돈을 무려 1,000억원 이상을 OB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OB공장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1,00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이는 公示地價이고, 현 시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OB공장을 사들이는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재벌을 살리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땅을 서울시가 너무나 많이 팔아먹다 보니까 판 만큼 적어도 다시 사들이라는 趙淳 市長의 지침에 의해서 70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706억원은 올해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706억원을 땅 사들이라고 지난번 우리 臨時議會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 533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서울시가 계획을 냈고, 우리 本會議는 이를 의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올해 회기는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706억원은 議會에서 의결까지 받아놓고 한푼도 집행도 하지 않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지금 OB공장을 어떻게 사겠느냐,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706억원으로 우선 OB공장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의 편중된,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1,070만평이나 되는데도 적어도 이 OB공장부지의 땅은 올 8월까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8월 29일입니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투자심사분석이 10월 23일에야 되었습니다.

통상 주요 예산편성이 8, 9월에 끝나고,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8월 14일 이전에 익년도 예산반영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

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결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는 1,000억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소상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공장 이적지, 특히 OB공장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主務局·室長도 잘 모르고 있었고, 위에서 지시해서 추진했을 뿐이라는 공무원들의 이면적인, 비공식적인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議會의 議員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공원화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3,555억원인데 이 중에서 永登浦區 공원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7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4개 區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한 區에 이렇게 치중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OB뿐만이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무수하게 많이 지금까지 발생했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한 후에 議會의 의결을 요구하거나, 또 집행을 이미 끝내고, 또는 집행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議會의 의결을 받으려고 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법 지키는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서울시 공무원들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많이 벌어졌던 절차상의 하자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또 다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금라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議員; 生活環境委員會 소속이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이번에 일했던 이금라 議員입니다.

공장이적지 부지를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地方財政法 제77조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地方財政法 제77조는 여러 議員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議會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77조에 위배되는 것은 공장이적지 부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등 시유재산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법령 위반을 심도 있게 따졌습니까 다만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부터는 執行部가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地方財政法 제77조를 위배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음 쟁점은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동안 오랫동안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먼저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自治區 형평문 제도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本議員의 생각은 공장이적지는 이번에 공원으로 서울시가 사들이지 아니하면 곧바로 다른 용도로 팔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현재 올 97년도 예산에도 500억원이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돈이 배정될 것이므로 1,2년 정도 뒤로 밀린다고 하여도 서울시 전체 공원 크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공장이적지를 또 다시 아파트숲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다 할 서울시가 자랑할 공원도 없는 현재의 서울시의 형편으로 볼 때에 趙淳 市長 임기 내에 이 일이 명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議會가 밀어주는 것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서울의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유재산관리계획이 本會議에서 보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96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97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議員님들께서 지금 보류동의안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장이적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여러 議員님들께서 파악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梁敬淑 議員과 이금라 議員의 발언에 대해서 執行部側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執行部側에서,

(「답변요구 안 했잖아요」 하는 議員 있음)

(「의결하세요」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金相男 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金相男 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男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소속 金相男 議員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우리 OB공장 매입건에 대해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되고 재상정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같은 財務經濟委員會 소속인 議員들끼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연속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게 지금까지 여러 번 절차문제, 법령문제, 조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梁敬淑 議員께서 706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한 건도 토지매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소속 열여섯 委員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

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06억원이 작년에 금년도 토지매입 자금으로 일괄 계상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11월에 市 執行部로부터 年金管理公團 소유의 땅을 사겠다고 저희 財務經濟委員會에 제안을 했고 이것이 本會議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필지수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532억이고, 이것이 鑑定價에 의해서 年金管理公團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 감정이 끝나는 대로 年金管理公團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梁敬淑 議員이 말씀하신 706억을 하나도 안 쓰고 OB공장 매입을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OB공장의 특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두 번 동안 심의하면서 이 땅을 우리 시민을 위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OB에서 신청한 아파트를 짓게 할 것이냐를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OB가 永登浦區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섯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永登浦區廳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공원이 좋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파트건립보다는 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까 절차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금라 議員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議員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곁들여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金芳任 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芳任 議員; OB공장 매입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 돌이켜보면 서울시 예산을 너무 편파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번 남산제모습가꾸기가 먼저인지 安企部 이전문제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安企部 이전 문제에 맞추어 남산제모습가꾸기를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安企部라는 것은 사실 市有林과 國有林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安企部の 전신인 中央情報部가 거기 60년대 초반에 권력기관으로 들어 설 때 무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으면 나갈 때 市民한테 그냥 돌려 주고 나가야 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권력으로 들어온 기관이었는데 시민의 혈세를,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했나 하는데 대해서는 여간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데 OB공장매입에 관해서도 다른 議案 같았으면, 다른 사업에 관한 것 같았으면 8월 이전에 이것이 심의가 되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0월 중순도 아니고 10월 24일인가 이렇게 심의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급행으로, 다른 사업은 어떻게 지지부진 끌면서도 이 OB공장매입 공원화 사업은 이렇게 박차를 가하시는지 여기에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조그마한 땅들,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조

그마한 땅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을 20년씩 하면서 이렇게 1,000억원이 넘는, 실질적으로 1,100억원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일시에 매입한다는 것은三尺童子가 보아도 여기에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議員 여러분, 議員 여러분 지역에 조그마한 것, 단 몇십억짜리, 몇억짜리도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大財閥會社의 工場은 좀 천천히 주어도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천천히 준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아파트숲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公園地域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公園으로 묶었으니까 집 못 짓는다 해 놓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미집행 하면서 財閥會社의 땅은 늦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급행 고속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예산을 통과해서 주느냐 마느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연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울市 예산을 이렇게 어떤 特定 權力機關이나 特定 財閥한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李聲九; 같은 件으로 議事進行發言이 계속되는데 회의진행상 네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議員께서 요망한 집행부의 답변은 金相男 議員의 발언과 같은 범주라고 여겨서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면서, 梁敬淑 議員과 金芳任 議員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

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議席에서 梁敬淑 議員 : 金相男 議員의...... 아니지 않습니까, 왜 議員이 답변을 해야 합니까?)

답변이 같은 범주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梁敬淑 議員께서 하신 발언은 이미 議事日程 제1항에서 이 사항은 의결되었고, 本 豫算案은 豫決特委에서 의결되어 상정되었으므로 梁議員께서 양해해 주시고.....

(議席에서 梁敬淑 議員 :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地方議會는 支出豫算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費目を 설치할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長의 同意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가 제출한 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議員 여러분의 議席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趙淳 市長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市議會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同意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1997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7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7년도 서울특별시에산안 수정예산안
(뒤에 실음)

9. 1997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16時)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聖浩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제14회 서울特別市議會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金聖浩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趙淳 市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이 19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修正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地方自治法 제133조에 의해 서울特別市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 등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12일 19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이, 그리고 96년 12월 6일에는 基金運用計劃修正案이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우리 議會에 제출되어 所管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해 우리 委員會에서는 전체회의와 소관별 심사에 이어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세밀한 검토와 기초심사를 거친 후에 전체회의를 통해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委員會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97년도 예산안과 같이 연기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修正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총 16개 기금으로서, 수정내역은 障礙人福祉基金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을 증액하여 기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8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시가스는 사업체가 자체 경영능력이 향상추세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5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 대한 판매장 설치 임차료의 일반회계출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판매장 증설은 계획대로 판매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원으로 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결과 운용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 9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1조 1,757억원에서 60억원을 감액하여 1조 1,697억원으로 조정하였고, 97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2조 2,982억원에서 60억원을 감액하여 2조 2,92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97년에 운용될 서울시 17개 기금중에는 條例가 制定되기도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거나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지 않는 등 法令 및 自治法規 節次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關聯 自治法規의 신속한 정비와 基金統合管理條例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修正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어서 1997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 및 97年度 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의결과 관련하여 趙淳 市長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趙淳 市長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존경하는 李聲九 副議長,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회 정기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 常任委員會의 예산심의부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총괄심사와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밤을 새워 가며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민선 제2차년도인 1997년에 서울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서울 만들기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책과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市 공무원 모두는 이와 같은 시민을 위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도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의 능률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민선자치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정은 취약한 자치여건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열심히 일하여 온 결과 이제는 과거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7년은 민선 2차년도로서 금년에 다져놓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민선 자치행정에 힘을 기울여 민선자치의 꽃을 피워 나가고, 시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민선시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는 내년에도 市議會와

동반자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議員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市議會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교통, 주택, 환경, 복지, 상수도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소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黃仁明 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黃仁明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明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黃仁明 議員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梁敬淑 議員이 서울시 예산에 관해서 3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형평문제하고 절차문

제하고 지역편중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기했을 때 梁敬淑 議員은 분명히 서울시 집행부에 대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회의를 진행하는 李聲九 副議長은 동료 金相男 議員의 답변에 같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金相男 議員이 여기 서울시長입니까, 副市長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을 보면 일방적으로 막고 풀고 하는데 이런 행태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 새 의장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면 우리 4대 서울시議會 후반기議會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李聲九 副議長의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聲九;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전부 의결됐던 사안이고, 豫算案에 있었고, 또한 같은 얘기가 찬성하고 반대가 교차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진행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黃議員님,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議席에서 黃仁明 議員 : 사과하십시오)

사과라기보다 진행의 편의상 부득이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梁敬淑 議員 :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場內 騷亂)

梁敬淑 議員이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梁敬淑 議員님, 金芳任 議員님, 黃仁明 議員님한테 집행부에서 직접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을.....

(議席에서 金芳任 議員 : 議長님, 우리 세 사람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의 議員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일단은 세 분께서 답변을 받아보고 미진하면 다음에 또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가 답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高光哲 議員,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高光哲 議員; 존경하는 先輩·同僚 議員님 여러분, 本議員은 松坡區 출신입니다.

1년 열두 달 가야 永登浦 땅을 밟아 보는 경우는 주례관계로 해서 서너 번 이상 가 보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本議員의 발언에 조금도 어떠한 편견이 없음을 전제하고 本議員이 豫算決算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충정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OB맥주 공장부지 매입건에 관해서는 양론에 대해서 本議員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 순간 저는 24년간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황희 정승의 일화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류가 당면한 논제가 바로 건설이냐 환경이냐, 이 문제입니다. 건설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질상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 환경은 조화를 이뤄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경제정책 발전과정을 보면 이 환경보전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은 어떠한 조화를 이뤄왔는가, 1인당 GNP가 2,000불 이내에서는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건설제일주의로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2,000불에서 5,000불사이에는 환경공해에 대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불 이상 될 때부터는 이제 모든 건설정책에, 경제정책에 환경문제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각 나라가 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을 하고 매년 유엔경제이사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美國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같은 데서는 오늘날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절감하는데 적어도 5억ha의 산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조사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의 死因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비율인데 그 암 사망자중에서도 위암사망자는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있고, 간암 사망자는 정체상태에 있고, 유독 폐암 사망자만이 지난 10년 동안 3배의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本議員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역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형평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배고프고 춥고 헐벗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문제를 보전하고, 환경을 개발해서, 개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아름다운 서울을, 자랑스러운 서울을 남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그러한 환경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문제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이야말로 바로 눈앞에, 어떤 목전의 결과를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더 과감한 진취적인 의욕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개인적으로 現 趙淳 民選市長의 환경정책을 이해하시고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쟁점이 된 OB맥주 토지매입건에 대한 梁敬淑 議員과 金芳任 議員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못해 준데 대해서 두 議員께서 몹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

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세 분한테 전부 확실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議員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25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鄭水華 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議員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회의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水華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鄭水華 議員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地方財政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特別市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주민공개 횟수는 매 회계연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개대상 중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당해연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운영계획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전년도 결산개황,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기업운영상황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당해연도 歲入·歲出豫算書, 전년도 歲入·歲出決算書 등과 함께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운영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自治區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적극적인 자동차공해방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市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업무가 현행 自治區와 市에 분산되어 있어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地方自治法の 취지에 맞게 이를 市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업무 중 가로청소,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自治區에 분산되어 사무처리의 능률 및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市로 환수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청소업무의 경우는 1997년 6월 30일까지 自治區廳長이 현행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가 되도록 업무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본 안건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在席議員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또한 각 常任委員會에 계신 議員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관계상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의결을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12.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3.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33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金廣洵 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洵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金廣洵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과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設置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인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을 설치하고, 院長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수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양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에 도움이 크리라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本廳 정원중 96년말까지 두는 한시정원 5명을 감축하고, 서울特別市公務員修鍊院에 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소 정원을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공무원수련원에 18명의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사업소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36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朴一男 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一男 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朴一男 議員입니다.

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과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本會議에 상정된 2건의 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는 지난 12월 17일 제5차 및 12월 18일 제6차 生活環境委員會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서울特別市에서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서울特別市消費者保護條例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및 市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이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國·公立試驗 檢査機關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명토록 조치하고 시정권고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市長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의 하자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유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중히 검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環境賞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사회 각계에서 노력하는 시민, 단체 등을 발굴, 환경상을 수여함으로써 서울시의 환경보전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의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환경상은 환경시민운동부문, 환경기술부문, 환경보전부문, 자원재활용부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수상인원은 총 21명으로 대상 1명, 분야별 각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입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환경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 단체 등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상시기는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며, 상패의 종류로는 상패, 매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行政1副市長이 되며,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 3명, 市議員 2명, 환경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환경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릴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7.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

長 提出)

(16時 42分)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
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洪承采 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采 議員; 保健社會委員會 所屬 洪承采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保健社會委員會 所管 條例案 심사보
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입니
다.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는 地方自治法 제133조 및 地方
財政法 제110조에 따라 조례제정 필요가 발생한 것이며,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제규정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보다 활성화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타 위생단체 출연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
도는 위생업소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와 기타 위생업소,
교육홍보, 연구기관 육성 등에 지출하며, 기금관리운용의 효
율화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사업인
시설개선자금 용자절차를 구체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

料等徵收條例案입니다.

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에 의하여 그 동안 운영되고 있던 부녀복지관이 발전적으로 그 명칭이 여성발전센터로 변경과 함께 독립적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별도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 범위와 면제대상자를 정하고, 기타 사용료 납입 및 관리절차를 정하는 것 등입니다.

지난 12월 11일, 12일 양일간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 保健社會委員會 전원 일치, 전원 찬성으로 서울特別市食品振興基金條例案과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상정안건이 오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8.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金永春·金信浩·金永俊·김장주·黃炳五議員外18人 發議)

19. 서울特別市公共施設内の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八卦議員 外

19人 發議)

(16時 45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特別市公共施設内の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崔俊和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俊和 議員;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崔俊和 議員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그렇게도 뜨거웠던 議長團 선거를 질서정연하게 훌륭히 치러 주시고, 議會가 시민에게 보여주신 원숙함에 대해서 의원 한분 한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保健社會委員會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8호 서울特別市公共施設内の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조례내용은 동 조례부칙의 경과규정에 계속이라는 문구를 살려서 기본계약자들의 민원을 풀어주고,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기하며, 지하철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동 조례안은 金永春·金信浩·金永俊·김장주·黃炳五 議員
님 외 18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特別市立精神
病院의 정신이라는 병원명칭이 인근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주거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병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保健社會委員會 제6차 회의에서 발의의원
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
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 위원회 전
원일치, 전원찬성으로 서울特別市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
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과 서울特別市立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
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20.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
監 提出)

(16時 50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特別市立學校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徐在浣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議員;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徐在浣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6년 11월 14일 서울特別市教育監이 우리 議會에 제출하였으며, 議長으로부터 1996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施行令 개정으로 서울特別市東部教育廳의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34개교 중 城東教育廳으로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6개교가 분리·이관되어 城東教育廳 소관으로 되었고, 北部教育廳의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39개교 중 城北教育廳으로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1개교가 분리 이관되어 城北教育廳 소관으로 된 사항과, 서울特別市立으로 자운초등학교, 염동초등학교 및 둔촌고등학교, 그리고 병설유치원 8개원을 1학기 개교예정으로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서울特別市立서울體育中學校를 96학년도 졸업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96년 12월 17일 제14회 정기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기존 東部教育廳과 北部教育廳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城東教育廳과 城北教育廳으로 소관이 조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분리 조정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지역교육청 업무조정의 일환으로 2개 지역교육청을 증설, 구역을 분할하였고, 이에 대해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施行令이 개정됨

에 따라 증설된 教育廳의 관할교육청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법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이며, 이번에 설립되는 北部教育廳 자운초등학교와 江西教育廳 염동초등학교 및 둔촌고등학교는 동 지역이 신개발지 내지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시설의 밀집으로 학생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골조공사 등 학교시설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어 개교 전 97년 3월 1일 사용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교원수급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학교를 설립하고 97학년도 1학기에 개교를 함에 있어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설 3개교 자운초등학교, 염동초등학교, 둔촌고등학교의 교명제정과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및 고등학교 4개교의 교명변경에 있어서도 당해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참고하고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校名制定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교명제정 및 변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폐지되는 서울체육중학교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제 확대 추세 및 지역교육청 산하 중학교별로 체육특기교육생 육성종목을 선정하여 교육토록 하여, 초등학교에서 기량이 우수한 선수는 지역교육청 특기육성학교에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지원자수가 격감하여 학교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었고, 95년도부터는 입학지원자가 1개반에도 못 미치는 관계로 신입생 선발을 하지 못한 실정에서 96학년도 졸업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신입생을 확보할 수 없어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 등 관련 행정사항은 동 시설을 입수하는 동일목적고등학교인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모든 것을 담임토록 하

고 江東教育廳으로부터 서울체육중학교 설립인가 취소 요청된 사안으로서, 이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는바, 동 서울체육중학교 폐지안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병설유치원(도신, 신상계, 남정, 개포, 방배, 청룡, 신자, 구의) 8개원의 신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희교실의 발생과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유치원 수요증가 등의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립유치원 위주로 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설되는 8개원의 유치원 시설은 기존학교의 유희시설에 유치원으로서 필요한 부대시설 개수공사가 공정을 평균 약 90%에 이르러 97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교원 수급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8개 유치원 신설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施行令의 개정에 따라 教育廳 관할변경에 따른 관련학교의 소속변경과 서울特別市立으로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8개원을 신설하며, 서울特別市立 서울체육중학교를 96학년도 졸업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우리 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56分)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金成春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春 議員; 交通委員會 소속 金成春 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지 주차상한제를 도입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부대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기존면적개념에 추가하여 세대개념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도심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가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심지는 주차장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 서울市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정하기로 하고, 개

정안 제13조의2에서는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建築法에서 정한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개정안 제17조에서 障礙人福祉法施行令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였으며, 개정안 별표1 자가용 승용차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및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상향조정하고, 징수단위시간은 최초단위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존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을 하고, 개정안 별표2에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가구주택일 경우 기존 133m²까지 1대, 133m²를 초과할 경우 90m²당 1대를 추가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제87회 臨時會 交通委員會에 상정되었으나 너무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해서 小委員會를 구성, 지난 4개월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라고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유통근대화사업을 추구하는 기존 재래식시장에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단서로 다만, 유통근대화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둘째, 개정조례안 제13조의2제5항에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建築法施行令 별표1에서 정한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을 신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市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심지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개정조례안대로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너무나 큰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므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부류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셋째,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용자의 조건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한 자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를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로 신설하고자 하며, 넷째, 개정안 별표2에서 주택가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일 경우 기존면적당 주차대수 확보에 추가하여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택지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민원도 해소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당 0.6대로 수정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수정하여 우리 交通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本會議에서도 우리 委員會가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서울特別市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關한基本條例案
(金永春 議員 外 34人 發議)

(17時 05分)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特別市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關한基本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金永春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春 議員; 交通委員會 소속 金永春 議員입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신 同僚·先輩議員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特別市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關한基本條例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사람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 교통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에 있으며, 그 동안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매년 40만명의 보행자들이 차량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행자 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47.8%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本 條例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市長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책무를 지고 둘째, 시민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협력하여야 하며 셋째, 市長은 매 5년 단위의 보행환경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넷째,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오늘날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시켜 서울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 법률이나 어느 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문제제기이자 앞으로 보행권에 대한 보다 큰 진전을 얻기 위한 초석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지난해 12월 이래 1년 여 동안 저희 交通委員會 소속 市議員 몇 분과 기타 유관 委員會 市議員들 여러분과 교통관련 분야 교수 그리고 서울市政開發研究院 研究員, 연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견고실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이 단체 소속의 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條例制定委員會를 두어서 이 委員會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본 조례안 시안이 작성되었고, 本議員을 비롯한 朴謙洙·梁會善·車星煥 議員 등 35명의 議員들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交通委員會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議員님들께서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本會議에서도 交通委員會가 의결한 대로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23.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7時 10分)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

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李基連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連 議員; 交通委員會 소속 李基連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들 앞에서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제3조 및 同法施行令 제12조에 의거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委員長은 行政1副市長, 副委員長은 交通管理室長으로 하며, 委囑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特別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의 기능은 100만m² 이하의 유통단지를 지정하여 유통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및 유통단지 관리지침 중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市長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本 流通團地審議委員會는 법정기구로서 마땅히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 委員會

에서는 市長이 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議員님께서도 交通委員會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內務委員會 委員長 提案)

(17時 14分)

○副議長 李聲九; 감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제24항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金明坤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明坤 議員; 안녕하십니까? 內務委員會 소속 金明坤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12월 6일 제2차 內務委員會에서 의결한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特別市 消防本部長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천백만 首都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책무에 상응하는 권한과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災難管理法 및 水難救護法上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의 완벽한 수행을 통하여 재난구조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5년 7월 18일 제정 공포된 災難管理法과 同法施行令에 재난현장 지휘 통제관이 消防本部長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제관의 기능은 군, 경찰 등 유관기관을 장악하여 현장 지휘 통제, 구조 구난대책의 총괄 등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소방정감, 즉 2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서 현장에서 여러 기관을 장악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또한 서울特別市와 釜山廣域市가 동일하게 消防本部長 직급이 소방정감으로 되어 있어 방대한 여건을 가진 서울特別市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아주 불합리한 직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서울市 직제의 본부장급이 1급인 것과 비교해 보면 5,000명의 직원과 760여대의 특수장비를 갖춘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데 消防本部長이 직급이 소방정감, 즉 2급에 해당되는 직급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特別市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고, 가스, 건물붕괴, 교통 등의 사고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도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해야하겠지만 재난구조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야말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 구조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서울市의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구조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特別市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消防本部長의 직급을 消防總監, 즉 1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을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서울特別市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消防本部長의 직급조정을 위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5. 電氣昇壓未改善學校의昇壓豫算에對한韓國電力의支援建議案(文化敎育委員會 委員長 提案)

26. 私立幼稚園敎師에對한擔任手當支給에關한請願(鄭韓植 議員 紹介)

(17時 18分)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담임수당지급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敎育委員會 鄭韓植 議員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議員; 鄭韓植 議員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서로 유사한 성격은 아니나 대다수 議員님 여러분께서 모두 다 찬성하시고, 또 저희 文化敎育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本議員이 일괄상정을 요구했고 또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은 현재 각종 학교에서 전기시설이 110V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기공급은 220V로 되고 있고, 또한 전력기구 역시 220V 전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연간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은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3만원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도 敎育法에 의한 각종 학교로서 공교육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사립유치원의 담임들에게 월 3만원의 담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議員님들 모두가 기이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本 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에 대해서 議員님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회의장 밖에 또는 각 常任委員會에 계시는 議員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議員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常任委員會에 계시는 議員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본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18건을 일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所管 委員會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이상 18건을 일괄 의결 및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7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계정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대한수정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
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뒤에 실음)

.....
서울특별시消防職制改編建議案
(뒤에 실음)

.....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
(뒤에 실음)

.....
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담임수당지급청원에대한의견서안
(뒤에 실음)

.....
○副議長 李聲九; 이상으로 제14회 定期會 제7차 本會議를
마치고 제8차 本會議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7分 散會)

○出席議員 138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魯泰塾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垆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柳德烈	柳鍾秘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이금라	李基連	李達源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在天	鄭鎮宇	鄭鎮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相勳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崔鍾根	金洙福	黃好淳
許光泰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李昌根	張精一	崔鍾德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長 趙淳